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92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5.

발의자 : 엄태영 · 안철수 · 이만희  
김용태 · 조지연 · 강명구  
서천호 · 박덕흠 · 유상범  
진종오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· 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. 농지의 교환 · 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지 교환 · 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).

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